



광 명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888호 2026. 4. 28.(화)

입 법 예 고

○ 광명시 공고 제2026-1102호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 고

○ 광명시 공고 제2026-1091호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회
람

발행 광 명 시 편집 홍보기획관 ☎ 2680 - 2061 시행 홍보기획관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동 222-1) □ 14234 접수

광명시 공고 제2026-1102호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광 명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본 조례가 ‘2026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에 따른 개선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과 관련한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환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용료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
4. 규칙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 5. 19.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02-2680-6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이용료를”을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로, “문학관”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학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용료”를 “이용료의 90퍼센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신청인이 문학관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시장은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
입 안 자	실 · 과 장	박진숙
	팀 장 직위 · 성명	문화정책팀장 손정숙
	담 당 자 성명 · 전화	김지현 (02-2680-621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생략) <u><신설></u>	제14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u>이용료를</u> 납부한 신청인이 <u>문학관을</u>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이용 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u>이용료</u> 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신청인이 문학관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u> 시장은 <u>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학관-----</u> ----- ----- ----- ----- <u>이용료의 90퍼센트</u>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0조(대관·대여에 따른 사용료)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관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계약 체결일로부터 대관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대관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관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로부터 10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등의 90퍼센트 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등의 90퍼센트와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 ③ 수탁기관(제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대관료등을 징수하고 징수한 대관료등은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준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근거

광명시 공고 제2026 - 1091호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883-18번지 일원의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8.

광 명 시 장

1. 공람 기간 : 2026. 4. 28. ~ 2026. 5. 20.(공휴일 제외 14일 이상)

2. 공람 장소

광명시청 도시재생과(☎02-2680-6062)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6334-8000)

3. 공람 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한 관계 서류

4.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방법 : 상기 공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방문, 우편) *우편은 기간 내 도달 건에 한함

나. 제출장소

1.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3층 도시재생과(철산동, 열린시민청)

2.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46, 201호(소하동, 기아파크빌)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883-18번지 일원

2). 면 적 : 7,869.2㎡

다. 사업의 시행자 :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46, 201호(소하동, 기아파크빌)

마. 변경 내용 :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비, 조합원 분담금 등)

6.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사업명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883-18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의견제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자 : (성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